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2011. 7. 1.	규칙 제559호
1차개정	2013. 5.23.	규칙 제628호
2차개정	2014. 7.23.	규칙 제651호
3차개정	2015. 2.12.	규칙 제663호
4차개정	2015. 8.28.	규칙 제687호
5차개정	2020. 3.27.	규정 제8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규정된 부속연구소 이외의 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 설립 요건) ① 연구소는 당해 교수연구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연구유형, 연구윤리 준수방안 등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② 삭제 <2014.7.23>

③ 삭제 <2014.7.23>

제3조(연구소 중앙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설립된 연구소 소장에 대한 위촉장과 연구소 현판을 제공해야 하고, 연구소장 및 교내·외 연구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0.3.27>

②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0.3.27>

③ 산학협력단장은 설립된 연구소를 관리하고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없는 연구소장과 연구원에 대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④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하는 본교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소 운영비) ① 연구소 운영비는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간접비를 연구비 수주 시 마다 정해진 비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관리하는 인건비와 지원비 등 각종 예산을 전항의 간접비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소가 연 3억원 이상 외부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공간을 1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가 연 6억원 이상 외부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구소 간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 등을 1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 운영비의 이월)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연구소 운영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연구소 평가) ① 연구소는 2년마다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한 운영 실적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7.23>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소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구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신설 2014.07.23>

1. 연구소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2년간 연구 실적이 없는 연구소

나. 평가결과 연속 2회 최하순위로 평가된 연구소

다. 연구소 운영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대학의 명예를 손상한 연구소

2. 연구소 통·폐합에 관한 사항

가. 연구소의 연구기능 및 학문 활동이 유사한 연구소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제559호, 2011. 7.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8호, 2013.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1호, 2014. 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3호, 2015.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7호, 2015.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6호,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제3조 관련)

연 번	연 구 소 명	설 립 일	폐 지 일	비고
1	스포츠언론정보연구소	2011. 9.14.		
2	노화연구센터	2011.12.16.		
3	스포츠산업경영센터	2011.12.16.	2012. 3.23.	
4	건강증진센터	2011.12.29.		
5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2011.12.29.		
6	스포츠분석센터	2011.12.29.		
7	스포츠의과학연구소	2012. 2. 6.		
8	멘탈코칭연구소	2012. 3.22.		
9	미래인재교육원	2012. 4.24.		
10	국제문화예술콘텐츠 연구소	2012. 5.30.		
11	스포츠건강과학 융.복합연구소	2012. 7. 2.		
12	모션이노베이션센터	2012. 9.25.		
13	해양수상레포츠연구소	2012.10.26.		
14	스포츠코칭연구소	2012.10.26.		
15	스포츠외교연구소	2012.10.26.		
16	고지연구소	2013. 2.27.	2020. 2.11.	
17	한국문화콘텐츠연구소	2015. 6.12.		
18	Easter Lab	2015. 6.24.		
19	스포츠IT 융합 웨이트트레이닝 연구소	2015.10.12.		
20	스포츠지도자심판교육원	2015.10.12	2020. 2.25.	
21	Chriology	2016. 5.11.		
22	휴먼 퍼포먼스 연구&교육 센터	2016. 5.11.		
23	한국 펜싱 아카데미	2016.10.12.		
24	태권도 국제교류연구원	2017. 1.23.		
25	스포츠응용산업연구소	2017.10.17.		
26	안전관리연구소	2017.11. 9.		
27	스포츠스토리텔링 연구소	2018. 6.29.		

평가항목 및 배점(제6조 관련)

평가항목	배점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연구비 수주액 ○ 해당 연구소와 관련된 대학회계수입 ○ 연구소가 유치한 발전기금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원 당 1점 	최대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편 당</th> </tr> </thead> <tbody> <tr> <td>국제전문학술지(SCI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r> <tr> <td>국내전문학술지[KCI급 등재(후보)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교수 1인이 소속된 연구소가 2개 이상인 경우 : - 연구소별 실적은 해당교수가 직접 배분하나 중복하여 배분할 수 없음 ※ 공동연구 : 실적을 1/n로 계산함(n=인원 수, 5인 이상인 경우는 5인으로 함)</p> ○ 저서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편 당</th> </tr> </thead> <tbody> <tr> <td>국외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r> <tr> <td>국내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td> </tr> <tr> <td>번 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n개 국어로 중복 발간 : 1권은 국외저서로 인정, n-1권은 번역으로 계산함 ※ 국.내외 중복 발간 : 1권은 국외저서로 인정, 나머지는 1권은 번역으로 계산함 ※ 공동저자 : 실적을 1/n로 계산함(n=인원 수, 5인 이상인 경우는 5인으로 함) ※ 논문을 동일 내용의 저서로 발간한 경우는 저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p> ○ 특허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건 당</th> </tr> </thead> <tbody> <tr> <td>국제특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r> <tr> <td>국내특허</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td> </tr> </tbody> </table> 	구 분	편 당	국제전문학술지(SCI급)	10점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등재(후보)지]	5점	구 분	편 당	국외저서	10점	국내저서	5점	번 역	2점	구 분	건 당	국제특허	10점	국내특허	5점	최대 100점
구 분	편 당																					
국제전문학술지(SCI급)	10점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등재(후보)지]	5점																					
구 분	편 당																					
국외저서	10점																					
국내저서	5점																					
번 역	2점																					
구 분	건 당																					
국제특허	10점																					
국내특허	5점																					
합계		200점																				